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목 차>

1.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 직위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이우혁
	담당부서 (과)	금융정보분석원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안창국		연락처	02-736-1752
	과장	이진호		이메일	leewoohyeok1453@korea.kr

2023. 11. 30.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 직위 신설		
	2.규제조문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5호, 제89조의 같은 내용		
	3.위임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12.1.~2023.12.1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보고책임자 임명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및 직위 신설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등에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 (고시 2년 6개월 후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사내이사 · 업무집행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부여 (고시 6개월 후부터 적용)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대형 금융회사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보고책임자 전문성 · 독립성 강화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 신뢰를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	<input type="checkbox"/> 자금세탁방지등 업무경력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해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도모 <input type="checkbox"/>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최소직위를 보장하여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② 제 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4. (생 략)</p> <p>5. 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 등</p>	<p>제5조(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② - ----- -----.</p> <p>1.~4. (생 략)</p> <p>5. 다음 각 목의 기준(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른 직을 겸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고책임자를 임명</p> <p>가. 자격요건(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p> <p>1)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경우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고 월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의</p>

현 행	개 정 안
	<p><u>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3) <u>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4) <u>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법집행기관,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검사수탁기관에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u>나. 직위</u></p> <p>1) <u>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사목부터 아목(조합은 제외한다)까지의 금융회사 등: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u></p> <p>2) <u>1)에 속하지 않고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 및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내이사 또</u></p>

현 행	개 정 안
	<p><u>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 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 회사등 :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이상</u></p> <p>3) <u>1)과 2)에 속하지 않는 법 제 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 자 금세탁방지등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정 직 위 이상</u></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자금세탁기법이 복잡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등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보고책임자 역할의 중요성 증대
 - * 전자금융거래·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은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보고책임자를 임명토록 명문화('10.07월)
- 하지만, 다수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경력이 전무한 임직원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해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
 - 또한,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적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한 보고책임자 직위 명문화 필요성도 제기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보고책임자 임명기준 유지
	내용	- 전문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요건을 자율판단
규제대안1	대안명	보고책임자 자격요건·직위 신설
	내용	-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업무경력 요구 - 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 등으로 임명
규제대안2	대안명	보고책임자 자격요건만 신설
	내용	-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업무경력 요구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해당없음	○ 보고책임자 전문성·독립성 미보장
규제대안1	○ 보고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 해당없음
규제대안2	○ 보고책임자 전문성 강화	○ 자금세탁방지 업무 독립성 저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형 금융회사등 (은행, 보험회사, 금융협회 등)	'23.7월 협회등을 통해 의견수렴	- 준법감시인등 겸직시에는 자격요건 및 최소직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함 -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보고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필요성은 공감하나, 2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를 원함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독립적 보고책임자 임명시 직위를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대안2) 금융회사등에서는 보고책임자 직위를 실무자 수준으로 낮출 우려
- 금융회사의 경영성과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특성상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최소직위 보장이 반드시 필요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각각 준법감시인 · 소비자보호총괄임원의 직위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보장

3. 규제목표

- 보고책임자 전문성 · 독립성 강화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자금세탁위험이 큰 대형 금융회사등에만 보고책임자 자격요건·직위 신설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일몰 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①FATF는 권고사항18 주석서에서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경영진 수준(management level)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음

②EU의 유럽은행관리국(EBA)도 '22.6월 EU Directive Guideline에서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총괄책임자가 경영진 수준에서 임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총괄책임자는 적절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등 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FATF Recommendation 40	일치	해당없음

○ 타법사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직위를 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별표2: 소비자보호총괄임원의 직위를 임원급으로 규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준법감시인등과 겸직하는 경우 자격요건 및 직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등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 검사·FIU 위험관리수준평가 등으로 모니터링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3.2월부터 6개월간 T/F 운영등을 통해 금융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임

2. 향후 평가계획

- FIU 위험관리수준평가·종합평가 및 검사수탁기관 자금세탁방지 전문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수준을 점검해나갈 예정

3. 종합결론

- 자금세탁방지등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필요